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3년 8 월 27 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손성도

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”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2조의2)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”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“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”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“광주민중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에 의한 광주민중화운동부상자와 같이 지방세(취득, 등록, 자동차세)를 감면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